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74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김기웅 · 김소희 · 추경호
주호영 · 이종배 · 김 건
서범수 · 박성훈 · 이만희
안철수 · 최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상 맞춤형 복지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인가구 지원사업의 수행 및 시설 운영
2.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3.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1인가구에 대한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관리프로그램 운영
5.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사업
6. 1인가구의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이용시설 운영에 대하여 1인가구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4조의3(1인가구지원센터의 설</u> <u>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u> <u>치단체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u> <u>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u> <u>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u> <u>치 ·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u> <u>단체별로 1인가구지원센터의</u> <u>설치 ·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u> <u>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1인가구 지원사업의 수행 및</u> <u>시설 운영</u> <u>2.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u> <u>한 실태조사</u> <u>3.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및</u> <u>지원사업에 대한 홍보</u> <u>4. 1인가구에 대한 정신건강 및</u> <u>신체건강 관리프로그램 운영</u> <u>5.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u> <u>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사업</u> <u>6. 1인가구의 생활역량 강화를</u> <u>위한 교육 · 여가 프로그램 운</u> <u>영</u>

7.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이용시설 운영에 대하여 1인가구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